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제한〉

■ 박 정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7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제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 정의원 등 22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1.
3. 회부연월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의 제한

개정안은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제5조제4항----- -----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4항----- -----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4항----- -----
제5조(예산 계상) ① ~ ② (생략)	제5조(예산 계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로 연동하고 있음¹⁾. 따라서,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게 되면, 나머지 국가재정 사업이 세수결손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지게 됨.

이러한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교부세에 분담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음. 첫째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²⁾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하면서 지방교부세 예산도 감액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예산의 일부를 불용(사실상 불용)시키는 방법임.

최근 2023년, 2024년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교부세 조정방식을 취하지 않고, ‘사실상 불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교부세에 분담시켰음.

1)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2)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2023, 2024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교부율 (B/A)
2023	66,644,552	59,475,700	7,168,852	89.2
2024	59,843,917	57,793,200	2,050,717	96.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사실상 불용’ 방식을 통한 지방교부세의 조정은 예측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소를 가져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상 불용의 방식을 지양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음.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상 불용방식의 지방교부세 조정은 2024년에도 반복되었음.

[2013,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관련 결산심사 시정요구 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유 형	조치대상 기관
2013	지방교부세법 의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	○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하고, 2013년도와 같이 지방교부 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행정 안전부
2023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 방지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 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 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 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공문 등 공식적 통보 없이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한 행위를 시정할 것 (시정)	시정	행정 안전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교부세 조정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불용’방식은 배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대규모 세수결손시 지방교부세의 감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방식보다 유연하게 세수결손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예산배정 유보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³⁾, 교부세 조정이 불가능하면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재정 사업의 불용·삭감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

문 의 처
02)6788-5333

3)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 시 당해연도 교부세 일부 조정은 정산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차차년도 일괄 정산은 지자체 재정운용 부담을 더욱 가중한다는 입장임.